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6. 6. 3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96. 6. 19
- 다. 상정일자 : 96. 7. 1(제45회 임시회 제1차총무위원회)

2. 제안 설명요지

- 가. 제안설명자 : 내무과장 이 병 일
- 나. 제안이유
 - . 재난사고의 철저한 사전예방을 위해 각종재해 시설물에 대한 현장안전지도 점검기능 강화를 위한 재난관리기구 인력보강 승인에 따른 정원조례개정
- 다. 주요내용
 - . 정원의 총수
 - 군본청 : 239명 → 242명(증3명)
 - ┌ 민방위 재난관리과 : 2명(7급건축1,8급토목1)
 - └ 지역경제과 : 1명(7급화공)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재휴)

- . 본 조례안은 내무부 재난관리기구 인력보강승인에 따른 화순군 지방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첨부 : 화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1996. 6. .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1. 제안이유

- 재난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재난사고의 철저한 사전예방을 위해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장 안전지도, 점검 기능과 지역재난 상황에 대한 24시간 종합관리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기구 인력보강승인 【자치 12200 - 793 ('96. 5. 8)】 되었으며
- 가스사용의 대중화로 가스시설 및 업무량의 증가로 가스업무 전담부서 인력 보강승인 【자치 12200 - 794 ('96. 5. 8)】 되었음.

2. 개정근거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 자치 12200 - 793 ('96. 5. 8) 호로 재난관리기구 인력 2명 보강 승인
- 자치 12200 - 794 ('96. 5. 8) 호로 가스안전 관리기능 인력 1명 보강 승인

3. 주요골자

- 군본청란
 - .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지방건축 7급 1명, 지방토목 8급 1명 증하고
 - . 지역경제과에 지방화공7급 1명을 증한다.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 본 청 : 242명
2. 의회사무과 : 18명
3. 직속기관 : 114명
4. 사업소 : 27명
5. 읍. 면(그 출장소를 포함한다) : 315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란
<p>제2조 (정원의 총수)</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군본청 : 239명2. 의회사무과 : 18명3. 직속기관 : 114명4. 사업소 : 27명5. 읍.면(그 출장소를 포함한다) : 315명	<p>제2조 (정원의 총수)</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군본청 : 242명2. 현행과 같음.3. 현행과 같음.4. 현행과 같음.5. 현행과 같음.